

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창원시의회 의장 이 해 련



2026년 10월 1일

창원시의회 훈령 제21호

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

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

◆ 개정이유

「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에 따라 복무 관련 전결사항을 통합·정비하고,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◆ 주요내용

- 가. [별표] 복무 업무내용 중 초과근무, 조퇴, 외출에 관한 내용 통합 및 삭제
- 나.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전결권자 변경
- 다. 공무원 휴가 명령 기안자 중 “전문위원”을 “수석전문위원”으로 변경